

의안번호	2216129
의 퇴 인	유동수의원
회 답 일	2026.6.4.
추계번호	26D026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 (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하 “공론화”라 한다)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제2항)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제2항)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 심사에 권고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평가)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제3항)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9조 (의견 수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 (규제 개선 점검·평가)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하 “공론화”라 한다)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규제 개선을 위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규제 개선 관련 사회적 갈등 요소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의견 수렴, 관련 사무의 처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등 필요한 지원체계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통상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와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나, 구성횟수, 규모, 활동형태, 기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공론화위원회는 약 7~15명 규모로 구성·운영되어 대규모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의제 및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고, 권고사항을 도출함

- (사례) 연금개혁 공론화과정의 경우, 공론화위원회는 의제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한 후, 500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학습·토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형성

- 다만, 대규모 시민대표단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경우, 시민대표단의 규모, 활동기간, 형태, 회의개최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시민대표단 규모가 약 500명 규모로 운영된 경우, 공론화용역비는 약 18억원~32억원 규모로 다양함

□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은 활동기한이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겸무나 전환배치 형식¹⁾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 편성예산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1)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당시 위원회 및 공론화지원단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겸무 형식으로 운영되었음

나, 관련 업무가 상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련 공무원의 증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참고]

[표] 기 설치·운영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대표단 활동 및 예산현황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특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특위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특위	경인아라뱃길 공론화특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특위	연금개혁 공론화특위(국 회)
주관	산업통상 자원부	국무조정실	국가교육회의	환경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 위원회
목적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공론화 진행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진행	아라뱃길 사업의 과거 정책의사결정 과정 분석 및 기능개선안 마련	제1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공론화 통해 재검토	연금개혁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운영 기간	2013.10. ~2015.6.	2017.7.24. 2017.10.20	2018.4. ~2018.8.	2018.10. ~2021.2.	2019.5~ 2021.4.	2024.1~ 2024.4.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9명	위원장 1인 포함 7명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위원장 1인 포함 11인
회의 횟수 (연도별)	4회(2013), 25회(2014), 9회(2015)	93회(2017)	14회(2018)	1~6회(2018) 7~18회(2019) 19~29회(2020) 30회(2021)	16회(2019) 24회(2020) 3회(2021)	9회(2024)
분과특위	운영소위원회 (5명)	법률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3명), 소통분과(2명)	조사분과(2명), 숙의분과(2명), 소통분과(2명)	물환경생태 (4명), 거버넌스(5명), 물류(2명), 관광레저(3명)	운영분과(5명), 의제분과(5명), 숙의분과(5명)	숙의분과(3명), 조사분과(2명), 소통분과(1명)
시민 대표단	(대표단 없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	471명	490명	지역시민 (120명)	596명 (시민참여형조사)	500명 (시민대표단)
공론화 용역비	실시 (541백만원)	시민참여형 조사 (2,402백만원)	실시 (1,800백만원)	인식조사 (19백만원)	실시 (3,297백만원)	실시 (2,462백만원)
활동 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고안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	주운기능 축소,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연금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6.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2017.10월)	권고안 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2018.8월)	공론화특위 이행을 위해 후속 연구용역(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시행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2021.12월) 고준위 특별법 추진 및 제정(2025.3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산 집행액	77.5억원	37.3억원	18.3억원	10.2억원	53.5억원	25.2억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